

LHCS 10 10 20 : 2020

자재 관리 일반

2020년 12월 9일 제정
<http://www.kosc.re.kr>



LH 전문시방서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

「LH 전문시방서(LHCS ; LH Construction Specification)」는 국가건설기준(KCS ; Korea Construction Specification)을 기본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방기준으로서, 단위공사 설계 시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므로 관계법상 구속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.

이 시방기준 발간 시점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시방 기준으로 공사시방서 작성 시 반드시 최신 시방기준 등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전문시방서 제·개정 연혁

- 이 시방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LH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(표준시방서) 간 중복·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.
- 이 기준은 기존의 LH 전문시방서를 중심으로 KCS 내용 및 체계에 맞게 통합 정비하여 제정한 것으로 제·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.

| 전문시방서 | 주요내용 | 제정 또는 개정 (년.월)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LH 전문시방서 | • LH 전문시방서 제정 | 제정 (2012.6) |
| LHCS 10 10 20 : 2020 | •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| 제정 (2020.12) |

제 정 : 2020년 12월 9일

개 정 :

심 의 :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

자문검토 :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

소관부서 :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

관련단체 : 한국토지주택공사

작성기관 : 한국토지주택공사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일반사항 | 1 |
| 1.1 적용 범위 | 1 |
| 1.2 참고 기준 | 1 |
| 1.3 용어의 정의 | 1 |
| 1.4 제출물 | 1 |
| 1.5 자재의 선정 | 1 |
| 1.6 운반 및 취급 | 3 |
| 1.7 보관 및 보호 | 3 |
| 1.8 레미콘.아스콘 불량자재 처리 | 3 |
| 2. 자재 | 4 |
| 3. 시공 | 4 |

1. 일반사항

1.1 적용 범위

- (1)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라 한다)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,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, 운반, 취급, 보관 및 보호 등 자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.

1.2 참고 기준

1.2.1 관련 법규

내용 없음

1.2.2 관련 기준

- KCS 14 20 20 자재관리
- LHCS 10 10 15 품질관리
-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
-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
-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(국토교통부고시)
- 자재관리지침(LH)

1.3 용어의 정의

- (1) 대체자재 : 수급인의 잘못이 아닌(자재의 생산중단, 구매 등의 문제)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LH에 자재의 대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재
- (2) 복수적용자재 : 설계도서 작성시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·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(공법)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
- (3) 친환경 건축자재 :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, 실내공기질관리법(제11조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제10조)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 과 관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

1.4 제출물

- (1) 제출물 일반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1.4.1 착공 전 제출물(SD-1)

- (1) 대체자재 사용 신청서
- (2) 복수적용자재(공법) 사용 신청서

1.5 자재의 선정

1.5.1 자재의 선정 일반사항

- (1) 수급인이 제공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해당 시방 또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.

- (2)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선정에 대하여는 LHCS 10 10 20 05(1.5)를 따른다.

1.5.2 대체자재 적용

- (1) 수급인은 해당 지방 또는 계약서에서 대체자재를 명시한 자재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2) 수급인은 대체자재 신청시 해당 지방 또는 계약서에 일치한다는 다음 사항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①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품질수준을 만족 또는 능가한다고 판단하는 근거
 - ② 설계서에 반영된 자재의 보증과 같은 조건의 대체자재 보증제공
 - ③ 수급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완성될 공사에 요구되는 다른 공사에 대한 변경과 비용 부담
 - ④ 대체자재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청구포기
 - ⑤ 관계 기관의 재승인에 관련되는 검토 또는 재설계 업무에 대하여 LH 또는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에게 하는 사후 정산
- (3) 대체 자재가 별도의 서면 승인신청 제출없이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품자료 제출시에 명시되었거나 묵시되었을 때, 또는 대체자재의 수용으로 계약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자재 대체는 수락할 수 없다.
- (4) 제출시기 및 부수
 - ① 제출시기 : 사유발생시
 - ② 제출부수 : 2부

1.5.3 복수적용자재(공법) 적용

- (1) 수급인은 해당 지방 또는 계약도서에서 복수적용자재(공법)를 명시한 자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복수적용자재(공법) 사용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2) 제출시기 및 부수
 - ① 제출시기
 - 가.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
 - 나.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자재인 경우 시공계획서 제출시
 - ※ 시험.검사가 필요시 소요기간 추가
 - ② 제출부수 : 2부

1.5.4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(주택)

- (1) 수급인은 LHCS 10 40 00(부록 6)에 명시된 품질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는 대피공간 및 비확장발코니를 제외한 실내 공간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써 LHCS 10 40 00(부록 6)에 명시된 자재 항목에 따른다.
- (3)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LHCS 10 10 15(1.8.1)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.
- (4)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LHCS 10 10 10 05(1.14.4)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6 운반 및 취급

1.6.1 운반 및 취급 일반사항

- (1) 수급인은 자재 운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충분히 습득한 후 운반 및 취급을 해야 한다.
- (2) 수급인은 자재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변질, 손상, 오염, 뒤틀림,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- (3) 수급인은 자재반입시 품질기준 요건 적합성과 반입수량의 일치여부, 자재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1.7 보관 및 보호

1.7.1 보관 및 보호 일반사항

- (1)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보관 및 보호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.
- (2) 수급인은 자재 보관 과정에서 변질, 손상, 오염, 뒤틀림,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
- (3) 건설공사용 자재중에 LHCS 10 10 15(1.8.1)를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.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.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품질시험.검사가 완료된 기 반입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(4)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야외 보관 자재에 대하여는 바닥에 지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재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5)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(6)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시에는 검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하며, 자재가 손상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.
- (7)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 합격자재는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, 불합격된 자재는 LHCS 10 10 15(1.8.5)를 따라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도록 한다.
- (8) 수급인은 반입된 자재 및 시공 중의 기성물에 대한 도난 또는 손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.

1.8 레미콘.아스콘 불량자재 처리

1.8.1 레미콘.아스콘 불량자재 일반사항

- (1) 레미콘.아스콘 불량자재 처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해당요건에 따른다.
- (2) 수급인은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불량자재 폐기 확인서를 자재생산업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
2. 자재

내용 없음

3. 시공

내용 없음

집필위원

| 성명 | 소속 | 성명 | 소속 |
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이한성 | 한국토지주택공사 | 박준호 | (주)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|
| 강기연 | 한국토지주택공사 | 홍승호 | (주)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|

자문위원

| 성명 | 소속 | 성명 | 소속 |
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이택훈 | 한국토지주택공사 | 김기식 | 한국토지주택공사 |
| 백기태 | 한국토지주택공사 | | |

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

| 성명 | 소속 | 성명 | 소속 |
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이영호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오상근 | 서울과학기술대학교 |
| 구재동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김갑득 | (주)포스코 |
| 김기현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김봉주 | 공주대학교 |
| 김나은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김영수 | 부산대학교 |
| 김태송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남정수 | 충남대학교 |
| 김희석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백민석 | (주)건축사사무소더블유 |
| 류상훈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서상욱 | 가천대학교 |
| 소병진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송제영 | BK방수연구소 |
| 원훈일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신성수 | 한국기술사회 |
| 이승환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신승섭 | (주)우진도장건설 |
| 이용수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장덕배 | 동양미래대학교 |
| 이용준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| |
| 주영경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| |
| 최봉혁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| |
| 허원호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 | |

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

| 성명 | 소속 | 성명 | 소속 |
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박지훈 | 인천대학교 | 이강민 | 충남대학교 |
| 신경재 | 경북대학교 | 이준성 | 이화여자대학교 |
| 안은희 | 경남과학기술대학교 | 주영규 | 고려대학교 |
| 오상근 | 서울과학기술대학교 | | |

소관부처

| 성명 | 소속 | 성명 | 소속 |
|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정우진 |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| 문영훈 |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|

(분야별 가나다순)

LHCS 10 10 20 : 2020 자재 관리

2020년 12월 9일 발행

소관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

관련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
(52852)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☎ 1600-1004(대표)
<https://www.lh.or.kr/>

작성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
(52852)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☎ 1600-1004(대표)
<https://www.lh.or.kr/>

국가건설기준센터
(10223)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(대화동)
☎ 031-910-0444
<http://www.kcsc.re.kr>